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의 수출입 화장품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

평등, 호혜 및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양 기관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정보교환, 경험공유 및 상호이해가 촉진되기를 바라며,

수출입 화장품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하면서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항 기본원칙

양 기관은 세계무역기구(WTO)의 무역기술장벽(TBT), 세계무역기구(WTO)의 위생·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(SPS), 기타 관련 국제 규정 및 기준, 동 양해각서와 각 기관의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성, 품질 및 교역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한다.

제 2 항 협력분야

양 기관은

1. 화장품 관련 각 기관의 법령,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2. 각 기관의 화장품 관련 검사기술, 검사방법, 정량한계,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협력한다.
3.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, 안전성, 위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시의 적절하게 타방측에 통보하며, 양 기관의 화장품 무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4. 상호 협력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기술전문가 및 관리자의 접촉, 의사소통, 대화, 논의, 기술교환 및 출장의 지원에 동의한다.
5. 화장품과 관련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조정한다.
6.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분야

제 3 항 협력수단

1. 양 기관은 중요한 관심분야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교대로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참석자는 각 기관의 국장급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추진상황을 검토하며 동 양해각서와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.
3. 실무작업반은 각 기관이 지정한 대표로 구성한다.
4. 실무작업반 회의는 한국과 중국에서 교대로 연례 개최한다. 다만, 양 기관이 합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양 기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각 국의 화장품협회 및 기업 등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. 양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화상 또는 전화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양 기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5. 구성원 및 의제는 양측이 사전에 정한다.
6. 각 기관의 가용예산과 자원에 따라 워크숍, 심포지움 및/또는 훈련과정을 공동으로 개최한다.
7. 국장급 회의 및 실무작업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 기관은 각자의 연락관을 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한다.
□한국 측 연락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김영옥 과장
(Email : kimyoungok@korea.kr)
□중국 측 연락관 :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Bai Lu
(Email : mengxj@aqsiq.gov.cn)

제 4 항 재정 및 비용부담

1. 각 기관은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.
2. 일방의 요청에 따라 타방이 제공하는 협조의 비용은 그 요청한 측이 부담한다. 다만, 양 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5 항 정보의 공개

양 기관은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과정에서 타방측이 전달하는 비밀정보를 그 타방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.

제 6 항 이건의 해결

동 양해각서의 해석 및/또는 이행에 있어서 양 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 7 항 효력 및 종료

1. 동 양해각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하다. 동 양해각서는 일방측이 이 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6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, 향후 5 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.
2. 동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.
3. 동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 종료 통보시 진행 중인 동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동 양해각서는 2010 년 10 월 28 일 서울에서 각자 동등히 유효한 한국어본, 중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2 부씩 서명되었고, 2013 년 12 월 20 일 북경에서 개정되었다.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
식품의약품안전처를
대표하여

정 승

중화인민공화국
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
대표하여

이해경